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제32조제4항 관련)

1. 종이류 기록물

가. 재 질

구 분	대 상 기 록 물
1등급	한지류 또는 중성용지에 먹, 보존용 필기류, 사무용프린터로 작성한 기록물
2등급	산성 또는 중성 재활용지에 흑색 및 청색볼펜, 잉크, 등사, 타자로 작성한 기록물
3등급	산성 재활용지 또는 신문용지에 흑색 및 청색 외의 색볼펜, 수용성 싸인펜, 형광 필기구류, 연필로 작성한 기록물

* 비고 : 종이의 수소이온농도(pH)가 7.0 이상이면 중성용지이고, 그 미만이면 산성용지로 구분함

나. 훼손도

구 분	구 분 기 준
1등급	종이의 외양 상 변화가 거의 없고 기록내용을 판독하는 데에 거의 지장이 없는 온전한 상태
2등급	종이의 파손·결실·변색이 있거나 잉크의 탈색·변색이 부분적으로 약간 있으나 기록내용의 판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3등급	기록내용이 포함된 부분의 훼손·변색·건조 또는 침수(浸水)되거나 곰팡이의 확산, 잉크의 탈색·변색 등으로 기록내용의 판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

2. 시청각기록물

가. 재 질

종 류	구 분	구 분 기 준
오디오 및 비디오류	1등급	재기록이 불가능한 비접촉판독식 광디스크
	2등급	디지털형 접촉판독식 테이프 및 플라스틱 재질의 음반
	3등급	아날로그형 접촉판독식 테이프
영화 필름 및 일반사진·필름류	1등급	· 폴리에틸렌·폴리에스테르를 기본재료로 한 흑백의 영화 필름 및 사진 필름 · 인화용지를 기본재료로 한 흑백의 사진
	2등급	· 폴리에틸렌·폴리에스테르를 기본재료로 한 천연색 영화 필름 및 사진 필름 · 인화용지를 기본재료로 한 천연색 사진
	3등급	셀룰로스에아세테이트·질산염 또는 유리를 기본재료로 한 필름

나. 훼손도